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6.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5호로 2021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2조)

-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기능(안 제3조)

-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 4)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 및 임원(안 제4조 ~6조)

- 1) 협의회는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2) 위원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임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 2) 협의회는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실무협의회(안 제13조)

- 1)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 해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전국 47개 단체장들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운영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최근 도시 재개발 등으로 원주민 이주와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파괴 및 상권의 퇴보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영등포구 내에도 이러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연대와 소통을 통해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이번에 제출된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영등포구가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며,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6.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6호로 2021년 6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
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자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 감면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감면 동의안 구의회 의결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4. 관계법령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7조
- 나. 「지방세법」
-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자에게 재산세 건축물분은 기존 4%에서 0.25%를 적용하고 토지분에 대하여는 4%에서 0.4%를 적용하도록 감면하려는 것임.

- 기존에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2021.6.8.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감면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을 금지되는 경우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음.

- 본 동의안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4호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69개 업장에 대하여 건물분 및 토지분 각각 69건씩 총 138건에 11억의 감면이 예상됨.

<감면 규모 추계>

구 분	계	건 물	토 지	비고
세율경감		4%→0.25%	4%→0.4%	
감면건수 (건)	138	69	69	
감면액 (백만원)	1,100	150	950	

다만, 본 재산세 감면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납세의무자인 건물주로 해당업소의 사업자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산세 감면의 효과가 집합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검토 결과

- 본 동의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 장기간 영업금지조치로 피해를 입은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은 적합하다고 생각되나 지방세 납세의무자와 실제 사업자의 차이로 감면의 효과가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

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

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